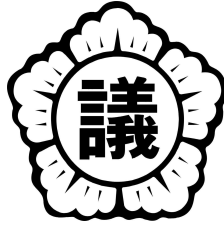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
----------	----

발의년월일 : 2015년 4월 16일

발 의 자 : 권영애, 김춘례, 목소영, 안향자,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임태근 의원 (8명)

1. 제안이유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있어 기능을 공고히 하고 역량 있는 임원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구성 및 임기제한 규정을 변경하여 자율방재단의 운영의 안정화를 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부단장의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변경 (안 제3조제1항)

나.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안 제4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4. 17. ~ 4. 2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단장 1명”을 “부단장 2명”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대표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p> <p>② ~ ⑦ (생략)</p>	<p>제3조(구성) ① ----- - <u>부단장 2명</u>----- -----.</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 ④ (생략)</p> <p>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u>2년</u>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3년</u>----- -----.</p>